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행령이 '94년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제6조, 제7조)

- 1) 공공조달의 중장기 정책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기재부장관을 위원장, 각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과 분과위원회(안 제6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등 2개)의 기능과 역할, 실무위원회의 설치(제7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카탈로그(상품안내서) 계약제도 신설(안 제13조)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여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 (카탈로그)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정보 등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설명서

다.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벤처나라)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안 제30조)

혁신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해서만 시범구매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 (혁신제품의 종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등

마.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사항 마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1) 법률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에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 2) 종합쇼핑몰 참가업체가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제한 관련 구체적인 처분 사유, 세부기준, 절차 등 규정

바. 법 체계 정비

현행은 장·조 구분없이 3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9장으로 구분한 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기업 지원, 혁신제품 공공 구매 지원,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의 근거를 추가하여 43개 조문으로 늘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25.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처진 안건의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

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 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나.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 논의

다.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

라. 그 밖에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제5조 및 제6조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달통계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
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기업별·계약방법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
각 호의 기관(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국
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총 계약금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자료 제출을 위하여 표준화된 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매월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0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

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요급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 등에 따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계약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의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다수공급자계약) ①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차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차액의 감액 및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카탈로그 계약)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 1인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구매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

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일 것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

급체의 구성, 계약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6조(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금”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금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금 대금
3.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경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 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0조(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제공·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주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

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품목에 대한 허위정보 등록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된 품목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별 대상,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기간, 거래정지 절차 및 기준, 그 밖에 거래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조사 업무 관련 기관,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조사기관등의 감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

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4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등 계획의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수행자 선정, 계약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사업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의 지원이
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의 지원이
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25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
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달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상품몰 운영

3. 그 밖에 조달 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 상품몰 등록 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식료품류 및 동물류·식물류 등 품질 확보가 곤란한 물품이나 무기·총포·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마감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 조달청장이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 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 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 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8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인증된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 조달청장이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30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접 제2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할 필요성을 인정
한 경우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조달청장이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 공개기준
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 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
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에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
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결과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 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비축사업

제32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차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환수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에 이용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업체 등록제한 및 차액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제36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제36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38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

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우선 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조달청장이 법 제32
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37
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
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
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2.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수

제9장 보칙

제40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성능·효율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③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2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5